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무인자유기구의 무게 제한 삭제 >

■ 이재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71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이재강의원 대표발의(2201371)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무인자유기구의 무게 제한 삭제(안 제2조)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다. 국토교통부 의견	8

□ 이재강의원 대표발의(220137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재강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7. 4.
3. 회 부 일 : 2024. 7.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도 대남 오물풍선 투척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 등으로 맞대응함으로써 수도권을 비롯한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걱정 및 불안이 날로 심대해지고 있음. 이에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대북 전단 살포에 쓰이는 풍선(기구류)은 현행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제3호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에는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만을 무인자유기구(풍선)로 명시함으로써 현장에서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현행 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써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제한공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운용에 대한 각종 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물건의 무게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등의 경우 또한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풍선 등의 기구류는 그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각종 규율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Ⅲ. 검토의견

1. 무인자유기구의 무게 제한 삭제(안 제2조)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 「항공안전법」¹⁾은 기구류(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²⁾은 그 일종으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자유기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이 해당됨.

초 경 량 비 행 장 치	기구류	유인 자유 기구	 기체의 성질이나 온도차 등으로 발생하는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로 오르는 원리로, 사람이 탑승하는 비행장치
		계류식 기구	 기체의 성질이나 온도차 등으로 발생하는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로 오르는 원리로 지상에 결박되어 있으며, 사람이 탑승하며 비행장치
		무인 자유 기구	 기체의 성질이나 온도차 등으로 발생하는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로 오르는 원리로,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비행장치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

1)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4. 기구류: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나.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다. 계류식(繫留式)기구

개정안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기구가 무게와 관계없이 외부에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 무인자유기구로서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u>기구류</u>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4. ~ 34. (생략)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기구류(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구 외부에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를 포함한다)----- -----. 4. ~ 34.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항공안전법」³⁾은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3)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무인자유기구를 초경량비행장치 제한구역에서 비행시키려는 경우, 일정 고도 이상에서 비행시키려는 경우 및 관제권 등의 구역에서 비행시키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⁴⁾,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는 경우 기구에 매달린 물건의 무게에 따라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바, 그에 따라 법령의 적용 여부가 달라짐.

3.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4)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구역·통제구역·주의구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

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제16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편,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전단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5)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결정(2020헌마1724 등)을 함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6차례, 2023년 6차례 대북전단 살포가 이루어지고, 2024년에는 7월 기준 10차례 대북전단 살포가 이루어지는 등 대북전단 살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바⁶⁾ 있으며, 지난 7월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전단 살포용 풍선 격추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대한 총격이나 포격을 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⁷⁾하였음.

즉, 대북 전단 살포가 반복될 경우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지역 주민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고, 이에 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에

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전단등 살포

6) 대법원 2016. 2. 25. 선고 2015다247394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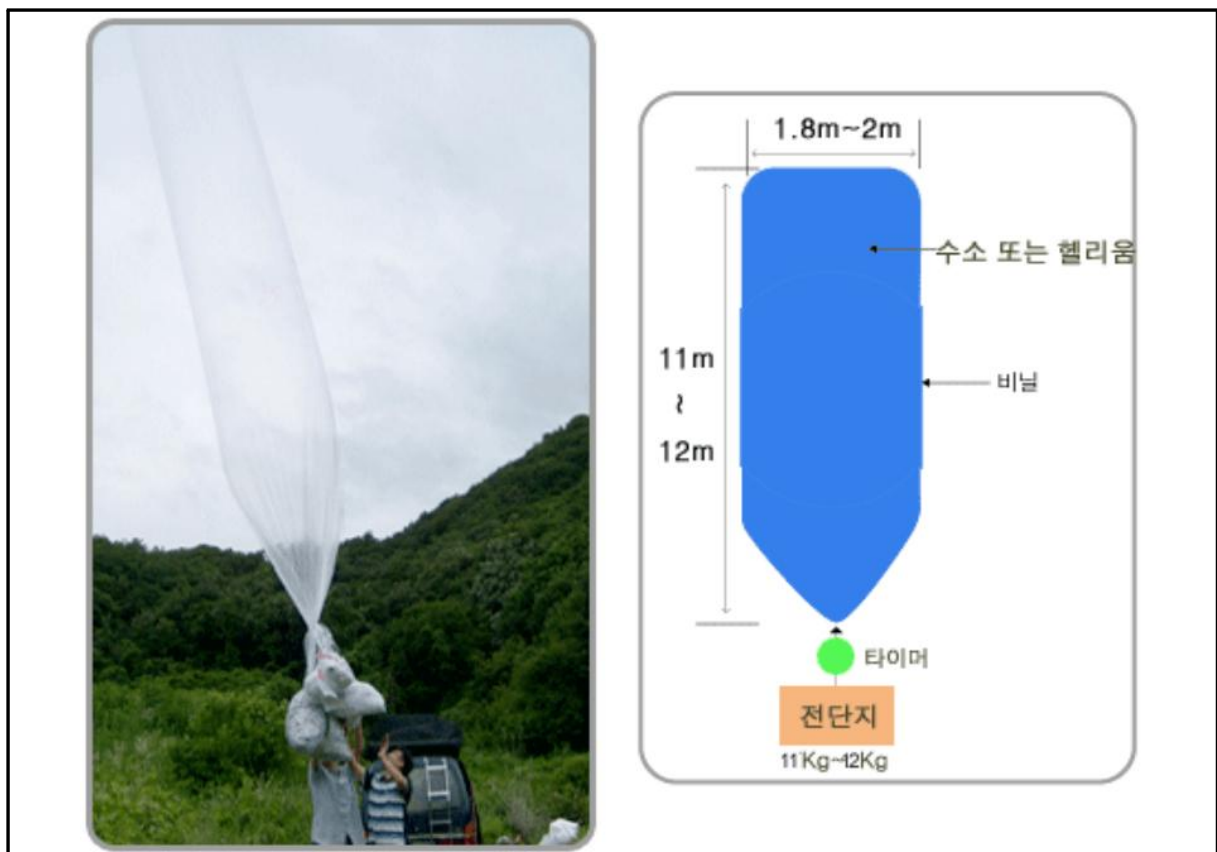
7) MBC뉴스, 국방부 장관 “북한, 대북전단 날리는 남측 장소 포격할 수도”, 2024.7.24.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20429_36445.html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에 이용되는 비닐풍선이 매달고 있는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법령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대북 비닐풍선을 비행시키고자 하는 경우 비행허가 등이 필요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대북 비닐풍선 개요 】



자료 : 국토교통부

다만, 개정안에 따라 풍선 등 기구에 매달린 물건의 무게에 관계없이 이를 무인자유기구로 보도록 하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날리면 범법자가 되어 자칫 범법자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한 기사⁸⁾에 따르면 대북 비닐풍선이 매달고 있는 물건의 무게는 대개 6.5~7.5kg으로 2kg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현행법령에 따르는 경우에도 무인자유기구로 볼 수 있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철저한 단속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무인자유기구의 개념 및 무게 제한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 규율하고 있는바, 법체계상 부령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무인자유기구의 무게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장난감용·행사용 소형풍선 등이 모두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로서 비행승인 및 비행허가가 필요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8) 채널A, 국토부 “대북전단 2kg 넘으면 위법” vs 탈북단체 “200kg 계속 날린다”, 2024.7.30.

“탈북 단체의 대북 풍선 무게는 대부분 2kg을 넘습니다.

[장세울 /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 “단체들이 6.5kg에서 7.5kg을 띄우거든요.””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24311

< 해외 무인자유기구 분류(유상하중 기준) 및 비행승인 기준 >

구분	무인자유기구 기준			비행승인(허가) 기준
	소형	중형	대형	
ICAO	0~4kg 미만	4kg 이상 6kg 미만	6kg 이상	· 국가로부터 적절한 승인 후 비행가능
미국	4파운드(2kg) 이상			· 비행 위치, 주위 구역 등에 따라 승인 필요
한국	2kg 이상~4kg 미만	4kg 이상~6kg 미만	6kg 이상	· 기체 무게, 비행위치에 따라 승인 및 허가

문 의 처

02)6788-5580